

2026 대비 행정쟁송법(손승주) GS-2 7주차 모의고사 review

※ 수험 공부에 관하여

2기도 곧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몇 차례의 모의고사를 지나왔는데, 그간의 모의고사 복습을 잘하고 있으신가요? 나중에 쌓아두었나 한 번에 하려고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게 모의고사이니까, 지금부터 하루에 한 개씩 눈으로라도 빠르게 복습하자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간을 많이 투자한 복습이 베스트겠지만, 사람마다 시간적 한계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복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2차 시험은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문제를 잘 읽고, 문제에서 묻는 것에 대한 결론에 써주셔야 합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1문에 많은 분들이 문제를 잘못 읽으셔서 당초 처분사유를 추가사유로 혼동하는 등의 실수가 많았습니다. 실전에서는 결코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촉박한 상황 안에서 이런 실수를 줄이려면 모의고사 때부터 차분하게 접근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 모의시험 피드백

1. 1문

1)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자체를 누락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없었던 점 > 부정·긍정·제한긍정설의 대립 > 판례의 제한긍정설 > 현재 행정소송규칙 제9조로 명문화라는 흐름을 제대로 적지 않은 답안이 많았습니다. 이 흐름은 간단하게라도 위와 같은 순서로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2) 효과에서 기속력과 기판력을 혼동한 답안이 보였습니다. 추가·변경된 사유로 위법성을 심리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유에까지 기속력이 미친다고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추가 변경된 사유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설명한 답안은 맞을 수도 있는 설명이 아니라 틀린 설명입니다(기판력은 판결의 이유에 미치지 않습니다).

3) 일반론에 원고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법리를 적어 두고었다면, 적용과정에서 그냥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어 안 된다”로만 마무리하기보다는 뇌물 공여 사실은 동일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명시적 동의도 보이지 않는다는 두 가지 얘기를 모두 짚어 주면 훨씬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벌써 수 차례 드리는 피드백이지만, 결론을 누락하지 말아주세요. 별도의 목차로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좋겠으나, 배점이 작아 시간이 부족한 경우 예시답안처럼 목차 자체를 “사안의 적용 및 결론”이라고 하나로 작성해도 좋으니, 마지막에는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주십시오.

2. 2문

1) 일부취소 일반 요건(기속행위·가분성·특정 가능 / 재량행위는 전부취소 원칙)은 잘 쓰셨으나, 이 사안의 핵심인 과징금 판례(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있는 경우, 일부 위반행위 과징금만 위법하고 그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만 취소한다는 판례)를 정확히 현출하지 못한 답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 남들이 잘 못 쓰는 부분을 잘 쓰면 유리한 것이 당연하다면, 이 판례는 많 이들 못 쓰는 부분이니까, 만약 시험에 등장한다면 잘 쓰는 사람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지 도 모르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헛갈리셨던 부분은 일부취소의 요건(판례는 기속행위이면서, 소의 대상이 가 분성이 있고,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나,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 을 일탈, 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어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인 것 같습니다. 2행위에 대한 100억 원이라는 자료가 있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100억만 취소가 가능합니 다. 다만, 2행위 자체가 재량행위이므로 100억 원 중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고(재량권의 적 정 정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2행위에 대한 100억 원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 야합니다.

“[외형상] 하나의 처분 안에서 위법한 하나의 덩어리를 떼어 내되, 그 덩어리는 재량행위이 므로 통째로 떼어 낸다”는 논리를 숙지해 두시면 유사하게 응용되는 사례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 사정판결의 효과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점(행정소송법 제32조), 손해배상 등 병합 제기(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사정판결의 절차: 주문에 위법함을 명시(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제2문) 같은 조문 근거를 누락한 답안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정판결은 조 문을 꼭 펴놓고 옮겨줘야 합니다.

특히 효과 단계의 조문은 이번에 놓치셨던 분들은 반드시 함께 적어 둡시다. 그리고 ‘현저 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의미(취소의 필요성과 취소로 발생할 공공복리에 받 하는 사태의 비교·교량)를 누락한 답안도 많았는데, 꼭 저장해둬야 합니다.

4. 결

이번 회차의 나의 답안과 답안을 나란히 펼쳐 두고, 일반론에서 본인이 쓴 내용 중 포섭 단 락에 등장하지 않은 표현들을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명시적 동의’를 이론 파트에 적었는데 적용 파트에는 안 보이거나,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일반론에 있는데 포섭에는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안 나왔다면, 일반론을 잘 암기가 되고 있으나 적용 과정의 디테일이 조금씩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론을 암기으로써 머 리에 채우는 일도, 적용과정에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다시 꺼내서 사안이랑 엮어내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암기와 연습으로 나만의 답안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 시길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것도 많습니다.